

『2025 제주 국내·외 프리프로덕션 지원사업』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영상작품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외 영화영상 제작팀에게 제주도 프리프로덕션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.

2025. 9. 11.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장

1. 사업목적

- 제주 자연, 문화, 역사, 생활 등을 소재로 한 영상물의 기획·개발 체제비(숙박비, 식비 등) 지원을 통해 제주 로케이션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함
- 도내 해외 작품 유치를 통한 국가 간 콘텐츠 교류 활성화 발판 마련

2.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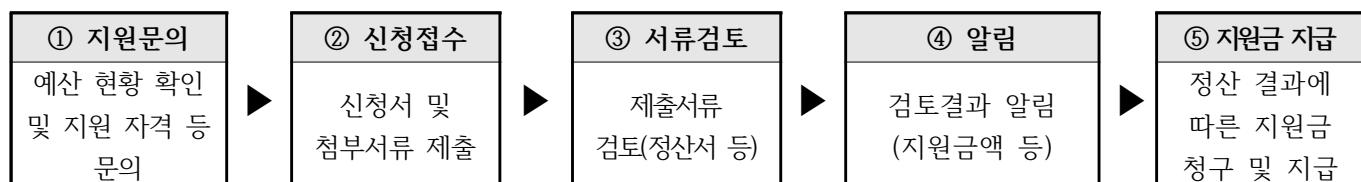
- 접수기간: 공고일로부터 2025년 11월 16일(일) 18:00까지 수시 접수
- 지원대상: 2025. 1. 1. ~ 11. 16. 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작품기획 및 로케이션 스카우팅이 종료되었거나 준비하는 모든 제작사, 제작자, 감독 및 작가
- 지원분야: 기획개발(시나리오개발 등), 로케이션 스카우팅
- 지원방법: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
- 사업내용

구분	A유형(국내작품)	B유형(해외작품)
자격요건	제주 촬영을 계획 중인 국내 영상물 - 최소 러닝타임 60분 이상	제주 촬영을 계획 중인 해외 영상물 - 최소 러닝타임 60분 이상
지원편수	5편	2편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작품 당 최대 300만원 사후 지원○ 기타 헌팅 및 로케이션 관련 행정적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작품 당 최대 750만원 사후 지원○ 기타 헌팅 및 로케이션 관련 행정적 지원

* 유의사항

- 실험영화, 뉴스, 시사다큐멘터리, 포르노 지원불가
- <2025 제주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>과 동일 지출 항목에 대해 중복지원 불가
- 정산검토과정에서 국세·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
- B유형인 경우 국내 제작사(PS 업체 등)가 아시아 소재지 제작사와 협업하여 신청 진행(참여 인원의 50% 이상이 해외 국적으로 구성)

3. 지원절차



4. 유형별 세부사항

A유형(국내작품)

1) 제출서류(신청접수 시)

구분	장편영화	TV 드라마	웹 드라마	다큐멘터리
신청접수시	1. 프리프로덕션 결과 보고서 (현장답사 일지, 시나리오·트리트먼트 수정사항, 자문결과, 향후계획 등)			
	2. 지원신청서[붙임1]			
	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[붙임2]			
	4. 제주 소비액 예산서[서식1]			
	5. 체류 관련 도내소비 증빙서류(정산내역, 영수증 등) [서식2]			
검토결과 알림이후 제출	1. 청구서(공문, 신청서 등 요청 시 양식제공 가능)			
	2. 지방세 완납증명서(개인 또는 법인)			
	3. 국세 완납증명서(개인 또는 법인)			
	4. 통장 사본(개인 또는 법인)			
	5. 개인 신분증 사본(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)			

*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사업 신청에 따른 소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

2) 정산항목에 대한 증빙자료

체재비 증빙내역	▶ 체류 시 사용 카드 앞면 사본 - 신청자 명의 또는 신청기관 법인, 대표 카드 등 ※ 영수증 내 카드번호 대조를 위한 서류로 유효기간 같은 블러 처리 후 제출, 대납불가
	▶ 카드영수증 - 소비액 중 영수증 상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사업장에 한함 - 유흥, 일반주점, 주류, 담배 등의 내역 포함 시 해당 영수증 전체 인정불가 - 본 공고문 [서식2]을 참조하여 영수증 첨부 필수 - 숙박료의 경우 영수증 외 인보이스, 숙박확인서 등 추가(실 숙박에 대한 증빙) - 차량임차(렌트)의 경우 임차계약서(차량 인수서 등) 추가(실제 차량 렌트에 대한 증빙) ▶ 계좌이체는 인정불가(단, 숙박비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정) - 계좌이체의 경우 추가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계약서, 통장사본, 사업증등록증 등 첨부)
항공, 선박료 증빙	▶ 항공 또는 선박 운임 등의 결제 영수증(카드 결제에 대한 승인번호가 기재되어야 인정) ▶ 탑승권 또는 승선권(실제로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내용의 탑승권) - 탑승권 사본(사진), 모바일 탑승권 인정 ※ 예매권, 예약확인서 등 인정불가

* 체류기간 내 최대 300만원 지원(선박 또는 항공 왕복 2회 포함)

■ 정산항목 인정범위

- ▶ 항공, 선박 운임은 체류 기간 중 인당(최대 5인) 왕복 2회/1인 당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(5인 총 150만 원 이내)
- ▶ 항공, 선박 운임은 일반석(등급)만 인정, 차량, 장비 등의 탁송비는 인정불가
- ▶ 항공, 선박, 운임 제외 모든 정산 내역은 영수증 상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사업장에 한함
 - * 숙박비의 경우 사이트 및 어플로 결제한 경우 제외(단, 숙박은 제주도내만 인정)
- ▶ 신청사의 법인카드·대표자 신용카드만 결제 인정되며, 개인의 경우 개인 명의 신용카드만 인정
- ▶ 숙박비(1인 1일 최대 15만 원), 식비(1인 1식 최대 2만 원), 차량 대여료(1일 최대 15만 원), 유류비(1일 최대 5만 원), 대중교통비(버스 제한 없음, 택시 1일 5만 원 이내) 인정
 - * 영수증 내 주류, 담배, 유통주점 관련 품목 포함 시 해당 정산금액 전체 인정불가
- ▶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
 - ex) 관계자 미팅을 위한 회의실 등 임차, 자료조사를 위한 제반적 소요 예산 등
- ▶ 제작사 신청 시 부가세 별도 금액만 인정, 개인 신청 시 부가세 포함 총 금액 인정

B유형(해외작품)

1) 제출서류(신청접수 시)

구분	장편영화	TV 드라마	웹 드라마	다큐멘터리
신청접수시	1. 프리프로덕션 결과 보고서 (현장답사 일자, 시나리오·트리트먼트 수정사항, 자문결과, 향후계획 등)			
	2. 지원신청서[붙임1]			
	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[붙임2]			
	4. 제주 소비액 예산서[서식1]			
	5. 체류 관련 도내소비 증빙서류(정산내역, 영수증 등) [서식2]			
검토결과 알림이후 제출	1. 청구서(공문, 신청서 등 요청 시 양식제공 가능)			
	2. 지방세 완납증명서(개인 또는 법인)			
	3. 국세 완납증명서(개인 또는 법인)			
	4. 통장 사본(개인 또는 법인)			
	5. 개인 신분증 사본(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)			

*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사업 신청에 따른 소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

2) 정산항목에 대한 증빙자료

체재비 증빙내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체류 시 사용 카드 앞면 사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자 명의 또는 신청기관 법인, 대표 카드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영수증 내 카드번호 대조를 위한 서류로 유효기간 등은 블러 처리 후 제출, 대납 불가 ▶ 카드영수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비액 중 영수증 상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사업장에 한함 - 유흥, 일반주점, 주류, 담배 등의 내역 포함 시 해당 영수증 전체 인정불가 - 본 공고문 [서식2]을 참조하여 영수증 첨부 필수 - 숙박료의 경우 영수증 외 인보이스, 숙박확인서 등 추가(실 숙박에 대한 증빙) - 차량임차(렌트)의 경우 임차계약서(차량 인수서 등) 추가(실제 차량 렌트에 대한 증빙) ▶ 계좌이체는 인정불가(단, 숙박비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좌이체의 경우 추가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계약서, 통장사본, 사업증등록증 등 첨부)
항공, 선박료 증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항공 또는 선박 운임 등의 결제 영수증(카드 결제에 대한 승인번호가 기재되어야 인정) ▶ 탑승권 또는 승선권(실제로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내용의 탑승권) ▶ 항공료는 해외 왕복 1회, 국내 왕복 2회까지 지원(일반석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결제영수증과 실제 탑승했다는 탑승권 필수 - 탑승권 사본(사진), 모바일 탑승권 인정 / 예매권, 예약확인서 등 인정불가 - 신청 제작사(국내)와 국내 스텝의 경우 국내 항공료만 인정

※ 체류기간 내 최대 750만 원 지원

■ 정산 항목 인정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항공료는 해외 왕복 1회(일반석)/국내 왕복 2회(일반석, 1인당 최대 30만원 이내), 최대 5인까지 지원 ▶ 항공, 선박, 운임 제외 모든 정산 내역은 영수증 상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사업장에 한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숙박비의 경우 사이트 및 어플로 결제한 경우 제외(단, 숙박은 제주도내만 인정) ▶ 신청사(국내 제작사)의 법인카드·대표자 신용카드만 결제 인정되며(해외여비제외), 해외결제인 경우 결제일 환율 적용 ▶ 항공, 선박 운임은 일반석(등급)만 인정, 차량, 장비 등의 탁송비는 인정불가 ▶ 제작 코디네이터(한국 현장 진행, 번역 원고료 등) 인건비 지원(최대지원금: 전체 지원비의 30% 이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인건비의 경우 1일 최대 40만 원만 인정(1시간 × 8만원 × 최대 5시간) ※ 진흥원 실비 보상 기준 적용 → 업무 계약서(국내 제작사와 체결), 과업 증빙 서류, 계좌이체 확인증,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▶ 숙박비(1인 1일 최대 15만 원), 식비(1인 1식 최대 2만 원), 차량 대여료(1일 최대 15만 원), 유류비(1일 최대 5만 원), 대중교통비(버스 제한 없음, 택시 1일 5만 원 이내) 인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영수증 내 주류, 담배, 유흥주점 관련 품목 포함 시 해당 정산금액 전체 인정불가 ▶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ex) 관계자 미팅을 위한 회의실 등 임차, 자료조사를 위한 제반적 소요 예산 등 ▶ 제작사 신청 시 부가세 별도 금액만 인정, 개인 신청 시 부가세 포함 총 금액 인정
----------------------	---

5. 신청접수

- 접수기간: 수시접수(2025.11.16.(일) 18:00까지),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
 - ※ 접수된 작품의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여부 개별통보
 - ※ 선착순으로 지급하되, 약정체결 이후라도 사업비 소진 시, 미지급
- 접수방법: 이메일을 통한 접수
 - 제주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ofjeju.kr>)에서 구비서류와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(※ 별첨 자료 참조) 및 요령에 따라 작성 후 메일로 접수
- 접수처: e-mail : rhguswl1212@ofjeju.kr / rhguswl1212@naver.com
 - ※ 메일발송 이후 접수 확인 필수
- 문의처: ☎ Tel : 064) 735-0662

5. 기타사항

- 참여제한
 - 신청일 기준 국세·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력이 있는 단체(개인)로써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참여 불가
 -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
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,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
- ※ 위 사항에 해당 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사업시행자의 의무

- 체류 계획 수행 시 협정된 일정 및 내용을 제주콘텐츠진흥원에게 공유

○ 선정취소

- 기간 내에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은 경우
- 불성실한 준비, 기획 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는 경우
-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(선정 및 지원금 지급 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)
- 당선작품의 협약 의무가 제 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

※ 선정이 취소된 경우 향후 2년간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

○ 유의사항

- 신청자가 응모 자격·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
 - 제안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 및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을 것
 - 필요 시 신청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 -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
 - <2025 제주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>과 동일 지출 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
- ※ 사업내용 및 지원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※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탈락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

2025년 09월 11일
제주콘텐츠진흥원 원장